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76

발의연월일: 2021. 3. 10.

발 의 자: 강민정・최강욱・장혜영

강은미 • 이상헌 • 박대수

류호정・이수진(비)・박성준

양정숙 · 남인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서 파견근로자 임금에 대한 중간착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협력사가 지급받은 노무비 중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47~61%에 불과하며 협력사가 현장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의 상당금액을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 시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도급계약서상 직접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중간착복 없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음.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 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 자파견의 대가'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영역이 불분명하여, 인 건비와 수당이 파견근로자 임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간착복이 발생하여왔음.

또한, 현재 입찰 계약시 도급비 설계가격인 예정가격 전체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가격우선순위를 결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최초 도급비 설계시 파견근로자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설정하여도 도급비 전체에 낙찰률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한 뒤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낙찰 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적용 되지 않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중간착복이나 감액 없이 파견 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 20조제1항제11호의2,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20조제3항).

법률 제 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26조제1항을"을 "제26조제1항·제3항을"로,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를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요구받은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지"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파견근로자의 임금

③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2항 중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20조제1항 각 호의 상세 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내역의"를 "상세 내역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세 내역의 요구 및 제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0조제1항제11호의2에서 정한 파견근로자임금을 파견근로자에 게 지급하지 아니한 자
 -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고용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	
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u>.</u>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15
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	
지 <u>아니한</u> 경우	<u>아니하거나 같은 항 각 호</u>
	의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u>하지 아니한</u>
16. • 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18. <u>제26조제1항을</u> 위반하여 파	18. <u>제26</u> 조제1항·제3항을
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제	제20조
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
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	지 아니하거나 요구받은 상세
한 경우	<u>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지</u>

- 19. ~ 23.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 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 결하여야 한다.
 - 1. ~ 11. (생 략) <u><신 설></u> 12. (생 략)
 - ② (생 략)
 - <신 설>

-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생략)

 -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19.	~	23.	(ই্	현행고	나 같	음)	
2	~	4	(현	행과	같음	<u>)</u>	
제20	조(기	계약	의	내용	등)	1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파견근로자의 임금
 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낙찰 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 다)을 적용하여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현 행과 같음)

 - ③ -----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신 설>

	- <u>상세 내역의</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
	세 내역의 요구 및 제시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렁
	으로 정한다.	
4]]44조(벌칙)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1항제11호의2에	서

- 3.
 제20조제1항제11호의2에서

 정한 파견근로자임금을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자
-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한자